

동일상호의 판단 기준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1. 개정이유

- 「상법」(법률 제20436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에 의해 지점등기부가 폐지되므로 지점등기부를 전제로 한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지점등기부를 전제로 한 규정을 정비함(안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4조제2항)
- 회사의 한 종류로서 유한책임회사를 추가함(안 제8조제1호)

3. 동일상호의 판단 기준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동일상호의 판단 기준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동일상호의 판단 기준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 중 “등기(본점을 이전하는 회사의 지점 등기가 당해 등기소의 관할 구역에 이미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를 “등기”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등기, 지점의 등기기록에서 상호 또는 목적을 변경하는 등기신청” 을 “등기” 로 한다.

제8조제1호 중 “합자회사” 를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절” 을 “장” 으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만으로 동일성을 판단한다.

1.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문자(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2. (생략)

제9조 (목적의 적격성) ① 목적(본질에서 '업종'을 포함한다)은 적격성이 있어야 하며, 적격성이 없는 목적은登記할 수 없고,登記되었어도 동일상호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지 아니한다.

② ~ ④ (생략)

-----.

1. -----
-----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2. (현행과 같음)

제9조 (목적의 적격성) ① -----
장-----

-----.

② ~ ④ (현행과 같음)

<의안 소관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연락처	(02) 3480-1888